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영국은 기존에 존재하던 금융업종별 금융감독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한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을 1998년에 출범시켰고, 각종 금융업법들을 통합하여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이하 'FSMA2000')을 2000년에 제정하고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 FSMA2000이라는 통합금융업법을 제정한 이유로는, 금융업의 겸업주의 수용,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금융기관별 규제의 비효율 및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기능별 규제의 도입, 금융범죄에 대한 대처 등을 들 수 있다<sup>1)</sup>. 금융업에 대한 규제 내용을 보면 진입규제, 행위규제, 건전성규제라고 대분한다면, FSMA2000은 이들 전체를 통합하였다. 한편, 호주도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을 2001년에 제정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통합한 것이다. 일본도 통합금융업법의 제정을 논의한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행위규제의 일부를 통합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2000년에 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영국 FSMA2000의 영향을 받아서 재정경제부와 금융발전심의회를 주도로 2003년부터 통합금융업법 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법안을 작성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진입규제, 금융연구원은 건전성규제, 증권연구원은 행위규제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은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겸업주의의 즉각적 도입보다는 전업주의를 향후 일정기간 유지할 것을

---

1) Taylor, "The Policy Background", *Financial Services & Markets Act 2000*, Blackstone Press Limited, 2001, pp. 1~16.

제안하는 잠정보고서를 발표하였다<sup>2)</sup>. 또한, 금융연구원도 건전성의 면에서 금융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합의 수준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잠정보고서를 발표하였다<sup>3)</sup>.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될 뿐만 아니라, 통합에 대한 업계, 전문가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겨지는 영역이 행위규제이다<sup>4)</sup>. 여기서 행위규제란 금융업자가 고객과 거래할 때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금융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업자의 행위를 기능별로 통합하여 규제하면 규제의 효율과 형평을 기할 수 있고 그 결과 금융고객을 보호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도 행위규제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통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FSMA2000의 행위규제에서 보험업이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데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통합금융업법의 제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즉, 보험업이 통합금융업법 제정 과정에서 그 특수성이 무시된 채 다른 금융업과 획일적으로 취급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통합금융업법의 모델로서 검토되고 있는 FSMA2000이 행위규제면에서 보험업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측면(보험업의 일반성)과 다르게 취급하는 측면(보험업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통합금융업법의 제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 
- 2) 한국개발연구원, 「통합금융법 제정을 위한 업무영역·제재·적기시정조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04년 금융정책심포지움, 한국금융학회.
  - 3)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법체제 개편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방향」, 2004년 금융정책심포지움, 한국금융학회.
  - 4) 시스템규제, 건전성규제가 통합에는 반대하지만 행위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견해로는, 김용재, 「가칭 "통합금융법" 추진에 대한 비판」, 한국금융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4, p.25.

##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FSMA2000에서 보험업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을 내용과 범위로 한다.

첫째, 영국과 우리나라의 영업규범의 개관을 밝힌다. 여기서 영업규범이란 행위규제를 규범화한 것을 가리킨다. 영국의 영업규범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 개념도 여기에서 다룬다. FSMA2000은 세가지의 영업규범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는, 대부분의 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영업규범(Code of Business: 이하 'COB')과 비투자보험영업규범(Insurance(Code of Conduct): 이하 'ICOB') 등이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COB는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1장에서 제8장까지가 연구범위이다. 제9장에서 제12장은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영업규범 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금융관련 영업규범을 담고 있는 법률 19개가 연구범위에 포함된다.

둘째, 영국과 우리나라의 영업규범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1)영국의 영업규범을 항목별로 분석한다. 여기의 항목은 COB를 기준으로 정하되 ICOB에만 있는 항목도 포함시킨다. 즉, (a)적용범위, (b)금융업자에 대한 공통규정, (c)금융광고, (d)소비자를 받아들이기, (e)권유와 판매, (f)상품고지 등, (g)거래와 관리, (h)소비자에 대한 통지, (i)보험금청구에 대한 처리, (j)영업규범의 위반시 처벌 등이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일반 금융업자에 대한 영업규범, 투자적 요소가 있는 생명보험업자(이하 '투자생명보험업자')에

대한 영업규범, 투자적 요소가 없는 보험업자(이하 '비투자보험업자')에 대한 영업규범의 내용을 밝힌다. (2)영국 영업규범의 항목별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영업규범의 항목별로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COB와 ICOB에 대한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통합법 논의방안을 제시한다.

###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문헌조사이다. 영국의 금융업자의 영업규범과 관련된 법령인 FSMA2000, COB, ICOB 등을 조사, 분석한다. 또한 영국 금융감독청이 COB와 ICOB를 제정하기 전에 그 초안을 작성하여 전문가, 업계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용을 검토한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조사·분석한다. 이외에 관련 전문서, 논문 등을 조사 분석한다.

본 연구를 문헌조사만으로 수행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각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COB나 ICOB 또는 자문보고서에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한 그러한 취지를 해석한 전문서, 논문이 희소한 까닭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자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그 취지를 판단해 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